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수목원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수목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존 제6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무료 조항 삭제

다. 수목원 입장료 및 재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수목원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수목원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입장료로 징수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수목원의 관람 품질 향상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공립수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목원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 징수 및 면제, 할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12. 11.~'20. 12. 3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목원 관람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목원의 입장료 징수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목원 입장료의 징수는 관람객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입장료의 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보다 조례안에 입장료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목원의 유료화가 도민과 관람객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목원 유료화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등이 필요하여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기 보다는 시행에 대한 경과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목원이 유료화 되는 만큼 입장료 수입이 수목원의 관람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목원의 가치 증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목원의 차별화된 운영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